

#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5468
----------	------

제출일자 : 2019. 9.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

## 1. 제안이유

- 가. 지역 청소년의 건강한 문화·예술·교육·소통의 활동공간인 ‘대구시 청소년문화의집’의 위탁 기간이 ‘19.12.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 나.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및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제13조에 의거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에 의거 대구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나.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 민간위탁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사무의 기준), 제5조 (위탁사무의 대상)

## ○ 추진 필요성

-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은 미래세대의 주인공이 될 지역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문화, 교육, 체육활동 등 다양한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 市 직영으로 운영 시 청소년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확보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전문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고 이는 인건비 부문의 증가로 이어져 문화의집 운영의 질적 하락이 예상됨.
- 따라서, 지역 청소년들에게 보다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현장경험이 풍부한 역량있는 기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 위탁대상 사무 등 위탁범위

### ○ 위탁범위 : 대구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전반

### ○ 위탁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내 각종 시설물 등 수탁재산의 유지·관리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활동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홍보
- 청소년 자치·자율 활동의 지원
- 청소년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개발의 지원
-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
- 청소년의 상담 및 지원

### 라. 위탁시설 개요

- 위치 : 남구 명덕로 34길 16(대명동)
- 시설규모 : 연면적 5,040.77m<sup>2</sup>(지하 1층, 지상 7층)
- 주요시설 : 대강당, 소강당, 시청각실, 강의실, 사무실 등
- 운영인력 : 14명(관장 1, 직원 13) ※방과후아카데미 인력(3명) 포함
- 위탁금 : 577,000천원(시비 100%, '19년 기준)

마. 민간위탁 기간 : 3년(2020.1.1. ~ 2022.12.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사

사.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민간위탁금 577,000천원('19년 기준)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출근거	비 고
합계	577,000		
인건비	389,341	· 인건비 389,341 - 급여 및 수당	
운영비	97,891	· 시설 유지관리 97,891 - 공공요금, 수용비, 관리비 등	
	89,768	· 경상비 89,768 - 4대 보험료 및 퇴직금 포함	
사업비	-	· 사업비 - 프로그램운영 등	• 참가자 활동수익 에서 지출

##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붙임 1
- 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2

## [붙임 1]

**관련법령****참고 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돋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 교류활동 ·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 ·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 · 물건 · 장소 · 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 ·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 · 운영)**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참고 2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참고 3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 참고 4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탁사무”란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를 말한다.
2.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3.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1조(시의회 동의 및 보고)

-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민간위탁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해당 사무에 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46조에 따라 시의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건 작성은 별지 서식의 민간위탁동의안을 따른다.
- ② 시장은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경쟁에 의한 방법(이하 “경쟁방법”이라 한다)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을 경쟁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정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경쟁방법으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수탁기관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시의 민간위탁을 수행하였던 경우에는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27조에 따른 회계감사 결과 및 제28조에 따른 감사 결과, 제29조에 따른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 ①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 및 이의신청에 대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대구광역시 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등에 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요구
  3.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
-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15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위탁사무 관련 해당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내로 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붙임 2]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19.12.31일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하여 공개 모집 및 적격자 심사를 통해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코자 함.

### I.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 청소년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대구광역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조례 제13조(위탁운영)
- 대구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3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4조(민간위탁 적격자심의위원회의 설치)

### II. 추진방향

-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단체 공개모집
- 수탁단체 선정은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합리적인 선정기준과 객관적 절차로 최적의 수탁단체 선정
- 수탁기관 변경시 운영관련 자료 등의 인수인계 철저

### III. 시설현황

#### ● 청소년수련원

- 위 치 : 달서구 앞산순환로 180
- 위 탁 금 : 727,870천원(시비 100%, 19년 기준)
- 주요시설 : 극장, 체육관, 세미나실, 야외공연장, 강의실, 생활관 등
- 주요사업 :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등

#### ● 청소년문화의집

- 위 치 : 남구 명덕로34길 16
- 위 탁 금 : 595,530천원(시비 100%, 19년 기준)
- 주요시설 : 대강당, 소강당, 다목적실습실, 회의실, 공연연습실, 컴퓨터실 등
- 주요사업 :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등

### IV. 세부추진계획

1

#### 민간위탁 개요

#####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간)

※ 2년에 한해 재계약 가능

##### ● 위탁절차 : 공개모집 → 적격자 심의(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세부계획 협의 → 협약(계약) → 공증

##### ● 위탁단체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에 의한 청소년단체로서 주 사무소 소재지를 대구광역시에 두고 있는 단체·법인

〈 청소년단체 〉

-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 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 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 청소년학과 · 교육학과등 청소년 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 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

● 위탁조건

- 수탁자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설의 종사자 고용 승계
- 수탁자의 소속 시설로 전용 금지
- 우리시가 별도 제3자에게 사용승인한 부분에 대한 사용권 인정
-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의 설정·전대·재위탁 금지
-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유지·보수 의무 부담
- 수탁자의 자립경영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비 일부 지원
-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우리시와 수탁단체의 위·수탁협약으로 정함

● 운영지원(민간위탁금) : 기존 위탁운영단체 운영지원 규모

2

● 공개모집

● 모집공고

- 공고기간 : '19. 10. 4.(금). ~ 10. 18.(금)(15일간)
   
※ 응모단체가 없거나, 1개단체가 응모할 경우 재공고(5일이상)
- 공고방법 : 시 공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

## ● 사업설명회

- 일 시 : '19. 10월 중(예정)
- 주요내용 : 제안서 작성요령 설명, 질의응답 등

## 3

## 적격자 선정

- 선정방법 : 적격자 심의를 통해 적격자(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 구성

- 위원수 : 6~9명이내(위원장 포함)
    - 위원장 :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호선
    - 위 원 : 교수, 청소년단체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
- ☞ 적격자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 ●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 세부 심사항목 및 기준 : 붙임 참조
    - 수탁단체의 운영능력(20) : 조직·인력의 전문성, 재무 건전성, 관련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의 전문성 등
    - 시설에 대한 이해(10) : 수탁목적의 타당성, 중장기발전방향의 타당성 및 계획의 구체성 등
    - 시설운영계획(70) : 사업운영, 시설경영, 지역협력 계획 등
  - 심사방법
    - 다수 공모일 경우 : 심사기준표에 의거 세부항목별 심사
- ※ 심사위원별 채점,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일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높은 단체 선정

사업계획 발표

⇒

질의·응답

⇒

심사의결  
(심사기준표에 의거)

〈신청단체〉

〈심사위원,신청단체〉

〈심사위원〉

- 재공고 후에도 단독공모일 경우 : 신청단체의 적격여부만 심사
- 선정결과 : 시 홈페이지 게재 및 서면으로 개별통보

## 4

## 사업계획 협의 및 협약

- 사업계획 협의 : 적격자 심의 시 언급된 전문가 의견 반영 및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위·수탁기관 간 협의
- 협약(계약) : 대구광역시장과 수탁기관장 간의 협약(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내용을 공증

## V. 향후일정

- 의회 동의 : 제269회 임시회 상정
- 일상감사(감사관) : '19. 9. 26.(목)
- 수탁단체 모집공고 : '19. 10. 4.(금) ~ 10.18(금)
- 사업설명회 : '19. 10월 중 예정
- 신청서 접수 : '19. 10. 18(금) 10:00~17:00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적격자 선정 : '19. 10월 말 예정
- 선정통보 : '19. 11월 초 예정
- 일상감사 및 계약서 심사 : '19. 11월 중 예정
- 세부실행계획 협의 및 계약 : '19. 11월 ~ 12월
- 위·수탁사무 개시 : '20. 1. 1.